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4. 30. 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4월 9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4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○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정, 보완하고 위촉위원의 성비 구성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형 평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띄어쓰기 등 문장 오류 정정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제1항)
- 구-사업회간 위원회 구성비율 조항 삭제(안 제6조제1항
- 위원회 부위원장을 사업회의 회장으로 정정(안 제6조제2항)
- 구상선생기념사업회의 위촉위원 추천 조항 신설(안 제6조제3항)
-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 초과 제한규정 신설(안 제6조제4항)
- O 수당을 지급받는 운영위원의 범위 오류 정정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상시인 기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구상기념사업운 영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맞춰 정비하고,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으로.
- 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.
 - 안 제6조제1항(위원회의 구성)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, 현재 구상기념사업운 영위원회 위원현황을 반영하고자 구와 (사)구상선생기념사업회(이하 '사업회'라 한다) 간의 구성 비율 문구를 삭제함.
 - 안 제6조제2항~제3항(위원회의 구성)에서는 본 조례 제2조(주최)에 따라 "구"와 "사업회"가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어있는바,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사업회의 "회장"으로 변경하고, 사업회의 위원 추천 규정을 마련하여 "구"와 "사업회"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.
 - 안 제6조제4항(위원회의 구성)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인원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.
 - 안 제11조(수당 등)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의 범위를 정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우리 구(區)의 대표 문인인 구상(具常) 시인을 기리고 구상 문학상 제정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구(區) 문학 발전을 제고하고자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에 근거 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 조례」(제정. 2009.6.1 8.)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▲구민문학상 ▲구상문학상 ▲구상한강백일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, 올해 ▲구상 시비(詩碑) 주변 태양광 조명등 설치 ▲'구상-이중섭 우정의 명예도로명'부여 등을 시행할 예정임.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상시인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,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「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」에 따라 오류를 정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짐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별시 영등포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320 호

제출연월일: 2024. 4. 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상기념사업운영 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정, 보완하고 위촉위원의 성비 구성 조항을 신설 하여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, 띄어쓰기 등 문장 오류 정정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제1항)
- 나. 구-사업회간 위원회 구성비율 조항 삭제(안 제6조제1항)
- 다. 위원회 부위원장을 사업회의 회장으로 정정(안 제6조제2항)
- 라. 구상선생기념사업회의 위촉위원 추천 조항 신설(안 제6조제3항)
- 마.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 초과 제한규정 신설(안 제6조제4항)
- 바. 수당을 지급받는 운영위원의 범위 오류 정정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 라. 입법예고(2024, 3, 7.~ 3, 27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기념사업(이하"기념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하는데"를 "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"로 한다.

제2조 중 "기념사업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"를 "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(이하 "기념사업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"을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포함한"을 "포함하여"로, "구성하되, 구의 운영위원과 사업회의 운영위원을 동일한 비율로 구성한다"를 "구성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3항) 중 "부회장"을 "회장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-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구상(具常)시인 기념 사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- 1.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

- 2. 사업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- 3. 문화 · 예술 · 관광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
- 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1조 전단 중 "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구의 운영위원이 위원회"를 "위원회" 로, "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"를 "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벨문학	제1조(목적)
상 후보에 두 번이나 오른 세계	
적 문인으로 타계하실 때까지 3	
0년 넘게 영등포구에서 거주하	
면서 활동하신 구상(具常)시인	
의 높은 작가정신을 기리고, 대	
한민국 문학의 발전은 물론 우	
리나라 문인의 노벨문학상 수상	
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하여	
구상(具常)시인 <u>기념사업(이하</u>	<u>기</u> 념사업을 추진
"기념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하	하는 데
<u>는데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	
목적으로 한다.	<u>.</u>
제2조(주최) <u>기념사업은 서울특별</u>	제2조(주최) <u>구상(具常)시인 기념</u>
<u>시영등포구</u> (이하 "구"라 한다)	사업(이하 "기념사업"이라 한
와 사단법인 구상선생기념사업	<u>다)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</u>
회(이하 "사업회"라 한다)와 공	
동으로 추진하고 시행한다.	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	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
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</u> (이하	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기념사업	
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	
기 위하여 사업회와 공동으로	
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(이하	
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 제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구의 운영위원과 사업회의 운영위원을 동일한 비율로 구성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구의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 청장이 위촉한다.
- 1. 영등포구 행정국장
- 2.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
- 3. 문화·예술·관광 분야에 전 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
- 4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자

<신 설>

세6조(위원회의	구성)	1	
<u>포함하여</u>			
구성한다.			

<u><삭 제></u>

-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구상 (具常)시인 기념사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 촉한다.
- 1.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
- 2. 사업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- 3. 문화·예술·관광 분야에 전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사업회의 <u>부</u> <u>회장</u>이 된다.

<u><신 설></u>

제11조(수당 등) 제6조제2항에 따 제라 위촉한 구의 운영위원이 위원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
<u>람</u>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
고 인정하는 사람
<u>②</u>
<u>장</u>
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
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
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
하여야 한다.
]11조(수당 등) <u>위원회</u>
위원에게
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